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6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8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80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93
확인서	96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98
확인서	9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3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주 소: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
전화번호: 080-931-0399

작 성 자: 성 명: 김대현
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실 IR부 / 과장
전화번호: 02-3404-45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승인			
<input type="checkbox"/> 정관의변경			
<input type="checkbox"/> 이사의선임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nput type="checkbox"/>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보통주	17,312,574	12.61	본인	자기주식

※ 상기 소유주식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백복인	대표이사 사 장	보통주	293	0.00	대표이사 사 장	-
방경만	사내이사	-	-	-	사내이사	-
윤해수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
이은경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
백종수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
김명철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
고윤성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
임민규	사외이사	보통주	250	0.00	사외이사	-
계		-	543	0.00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우리사주조합의 개인계정에 보유한 주식 제외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입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효정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대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 상기 대리인은 발행회사의 직원으로 상기 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의 개인계정에 보유한 주식 제외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	-----------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03월 10일	2022년 03월 15일	2022년 03월 29일	2022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12월 31일 기준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https://www.ktng.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G타워 20층 IR부

- 연락처: 02-3404-4522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2년 3월 15일 ~ 2022년 3월 29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2년 3월 19일 ~ 2022년 3월 28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관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스크를 미착용한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주주 여러분의 안전이 우려되는바, 주주총회의 안전확보 및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시스템 또는 의결권대리 행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참고로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일정, 장소 변경 및 기타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국내담배사업부문은 COVID-19 지속에도 불구하고, '냄새저감/저자극' 및 '초슬림' 제품의 지속 성장으로 국내퀵런담배 M/S 64.6%를('21년) 기록,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에세 체인지 히말라야」('19년) 를 시작으로 「레종 프렌치 아이스블랑」('21년) 까지 흡연트렌드에 부합한 '냄새저감' 타입 총 9종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내 최초 시가래퍼 레귤러 캡슐 제품(보험 시가 카리브) 출시 등으로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브랜드 자산 제고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독자적인 전자담배 플랫폼의 성장으로 디바이스 점유율이 '21년 75%를 상회하는 등 퀵런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릴 솔리드 2세대의 전국확대, 독자 플랫폼 릴 하이브리드 2세대의 지속 성장, 소비자 니즈 기반 제품 20종 스틱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하여 퀵런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영향에도 디바이스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하여 오프라인 판매 위축에 대응하였으며 온라인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고도화, 비대면 택배 A/S 확대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각화를 이뤄냈습니다.

PMI社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제품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0년 8월 러시아, 9월 우크라이나에 「릴 솔리드」와 전용스틱 「핏」을 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년 10월 퀵런형 전자담배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의 후쿠오카, 미야기현 2개 지역에 「릴 하이브리드」와 전용스틱 「믹스」를 출시하였습니다. '21년 2월에는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일본 전 지역으로 유통이 확대되었습니다.

'21년에는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에 추가 진출하여 '21년말 기준 현재 총 23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해외 출시를 기반으로 PMI社와 글로벌 협업을 통해 보다 더 많은 국가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담배사업부문의 경우 해외법인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류대란에 따른 선복확보 어려움 및 일부 시장 COVID-19에 따른 Lock-down으로 인한 수출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일부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COVID-19로부터 점점 일상생활로 복귀함에 따라 판매 또한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부문은 생산설비의 최적화, 자체 정비 기술력을 활용한 경제적 생산체제를 지속 발전 시키고 있으며, 기존 퀵런 담배시장 외 그룹 新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차세대담배 생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국내외 차세대담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ESG경영 강화에 발맞춰 에너지·환경분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범사회적 자원재활용 트렌드에 맞게 재활용률 증대 등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Needs 및 제품특성에 적합한 국내·외 양질의 원료인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세계인담배 시장분석 및 Trend 예측을 통한 원산지간/년산간 전략적 구매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원가 최적화에 주력하였으며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화 인담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공급계약 등 수급기반 확대구축을 통해 원료인담배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판상엽 등 반제품 수출을 위해 기존 고객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고객 확보등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인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통해 고품질 재료품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래 회사 공급망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급사 인증제도(SQ)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통합구매시스템(KAPS)를 구축하여 계약절차 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전 연결 ·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tng.com>)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5(당)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4(전) 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5(당) 기	제 34(전) 기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31,32	946,570,845,404	1,253,611,491,485
기타금융자산	5,31,32,33	457,056,795,720	407,735,098,97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31,32	965,384,441,544	914,423,857,13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31	1,012,741,494,275	1,215,049,112,141
파생상품자산	31,33	580,339,743	12,710,170,259
재고자산	8,33	2,375,380,884,539	2,535,032,331,643
환불자산등	19	1,795,047,848	1,055,336,156
미수담배소비세등		324,920,390,897	271,576,536,047
선급금	33	98,044,889,263	96,525,759,106
선급비용		53,262,710,533	39,982,310,895
매각예정자산	4,14	20,123,696,708	2,680,613,295
유동자산 합계		6,255,861,536,474	6,750,382,617,137

비유동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	5,31,33	9,001,281,420	10,129,160,820
장기예치금	31,33	1,250,467,510,043	909,793,848,086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31	304,815,651,866	253,562,005,02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31	94,759,875,704	97,408,876,0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9,31	228,398,434,797	239,539,297,251
지분법적용투자자산	4,10,30	242,991,736,041	132,186,631,034
유형자산	11,33	1,741,041,767,893	1,718,412,218,663
무형자산	12	145,718,649,536	134,083,879,591
투자부동산	13,33	1,150,979,933,340	1,030,179,338,792
사용권자산	15	36,444,918,106	49,088,378,254
장기선급금	33	104,559,554,973	83,059,283,710
장기선급비용		8,538,939,470	9,578,669,254
이연법인세자산	28	52,555,448,304	50,933,089,250
순확정급여자산	18	11,135,956,233	45,859,229
비유동자산 합계		5,381,409,657,726	4,718,000,535,023
자 산 총 계		11,637,271,194,200	11,468,383,152,160
부채 및 자본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6,31,33,34	75,432,490,744	17,308,208,182
유동성장기차입금	16,31,33,34	2,166,480,000	37,506,480,0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0,31	971,120,364,253	969,201,720,579
유동성리스부채	31,34	17,180,641,274	19,879,792,617
파생상품부채	31,33	907,708,348	57,106,354
선수금		21,918,095,726	100,836,686,048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19,33	26,130,472,136	27,508,655,465
당기법인세부채	28	234,971,148,939	234,566,275,361
미지급담배소비세등		712,693,018,015	584,576,087,074
매각예정부채	14	-	51,000,609
유동부채 합계		2,062,520,419,435	1,991,492,012,289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6,31,33,34	53,195,098,748	53,492,407,96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0,31	57,433,928,854	49,479,702,490
장기리스부채	31,34	19,377,131,556	25,828,963,710
장기선수금		5,077,077,062	8,193,185,016
순확정급여부채	18	57,735,568,500	112,959,451,518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19,33	5,221,776,727	3,192,103,226
이연법인세부채	28	148,104,701,940	130,558,400,937
비지배지분부채	31	18,317,380,882	1,615,268,761
비유동부채 합계		364,462,664,269	385,319,483,626

부채총계		2,426,983,083,704	2,376,811,495,915
자본			
자본금	20	954,959,485,000	954,959,485,000
기타자본잉여금	20	4,497,785,722	4,497,785,722
자기주식	21	(879,981,829,569)	(531,618,093,579)
자기주식처분이익	21	528,894,053,906	528,894,053,906
적립금	22	6,490,161,242,572	5,977,643,096,280
이익잉여금	23	2,061,681,420,740	2,102,474,813,56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160,212,158,371	9,036,851,140,891
비지배지분	35	50,075,952,125	54,720,515,354
자본총계		9,210,288,110,496	9,091,571,656,245
부채 및 자본총계		11,637,271,194,200	11,468,383,152,160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5(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5(당) 기	제 34(전) 기
계속영업			
매출	4,24	5,228,351,596,536	5,055,311,487,897
매출원가	25,30	(2,350,179,718,847)	(2,127,074,299,458)
매출총이익		2,878,171,877,689	2,928,237,188,439
판매비와관리비	25,30	(1,539,788,398,057)	(1,455,054,499,409)
영업이익		1,338,383,479,632	1,473,182,689,030
기타수익	26	188,398,441,771	289,353,115,347
기타비용	26	(144,991,032,409)	(266,387,447,969)
금융수익	27,30,31	78,752,556,761	117,738,683,160
금융원가	27,31	(31,901,130,075)	(13,160,649,890)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감	10	10,911,173,678	4,135,483,6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39,553,489,358	1,604,861,873,371
법인세비용	28	(414,014,987,025)	(438,492,936,765)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025,538,502,333	1,166,368,936,606
중단영업			
중단영업이익(손실)	36	(52,353,800,233)	5,274,162,504
당기순이익		973,184,702,100	1,171,643,099,110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89,479,118,541	(49,876,625,82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	42,562,261,510	(16,212,208,2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9,31	11,842,842,363	(10,548,156,278)
지분법자본변동	10	7,024,011	(42,122,76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차이		35,085,579,708	(23,240,850,194)
지분법자본변동	10	(18,589,051)	166,711,629
당기총포괄이익		1,062,663,820,641	1,121,766,473,281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78,684,662,276	1,171,734,472,593
계속영업이익		1,031,038,462,509	1,166,460,310,089
중단영업이익(손실)	36	(52,353,800,233)	5,274,162,504
비지배지분		(5,499,960,176)	(91,373,483)
계속영업손실		(5,499,960,176)	(91,373,483)
중단영업이익	36	-	-
합 계		973,184,702,100	1,171,643,099,110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67,308,383,870	1,122,414,655,498
계속영업이익		1,119,097,782,722	1,118,989,368,578
중단영업이익(손실)	36	(51,789,398,852)	3,425,286,920
비지배지분		(4,644,563,229)	(648,182,217)
계속영업손실		(4,644,563,229)	(648,182,217)
중단영업이익	36	-	-
합 계		1,062,663,820,641	1,121,766,473,281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29	7,910	9,320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8,333	9,278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423)	42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5(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20년 01월 01일	954,959,485,000	4,497,785,722	(318,789,449,459)	528,894,053,906	5,680,008,923,230	1,834,645,992,314	8,684,216,790,713	55,368,697,571	8,739,585,488,28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171,734,472,593	1,171,734,472,593	(91,373,483)	1,171,643,099,11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5,653,977,560)	(15,653,977,560)	(558,230,658)	(16,212,208,2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	-	-	(10,548,156,278)	-	(10,548,156,278)	-	(10,548,156,278)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8)	-	8)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23,242,272,118)	-	(23,242,272,118)	1,421,924	(23,240,850,194)
지분법자본변동	-	-	-	-	124,588,861	-	124,588,861	-	124,588,861

기타포괄손익 소개	-	-	-	-	(33,665,839,535)	(15,653,977,560)	(49,319,817,095)	(556,808,734)	(49,876,625,829)
총포괄손익 합계	-	-	-	-	(33,665,839,535)	1,156,080,495,033	1,122,414,655,498	(648,182,217)	1,121,766,473,281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56,951,661,200)	(556,951,661,200)	-	(556,951,661,2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331,300,012,585	(331,300,012,585)	-	-	-
자기주식의 취득	-	-	(212,828,644,120)	-	-	-	(212,828,644,120)	-	(212,828,644,12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212,828,644,120)	-	331,300,012,585	(888,251,673,785)	(769,780,305,320)	-	(769,780,305,320)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954,959,485,000	4,497,785,722	(531,618,093,579)	528,894,053,906	5,977,643,096,280	2,102,474,813,562	9,036,851,140,891	54,720,515,354	9,091,571,656,245
2021년 1월 01일(당기초)	954,959,485,000	4,497,785,722	(531,618,093,579)	528,894,053,906	5,977,643,096,280	2,102,474,813,562	9,036,851,140,891	54,720,515,354	9,091,571,656,245
총포괄손익:									
당기손이익	-	-	-	-	-	978,684,662,276	978,684,662,276	(5,499,960,176)	973,184,702,10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1,586,638,052	41,586,638,052	975,623,458	42,562,261,5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1,842,842,363	-	11,842,842,363	-	11,842,842,3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843,256,032	(843,256,032)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35,205,806,219	-	35,205,806,219	(120,226,511)	35,085,579,708
지분법자본변동	-	-	-	-	(11,565,040)	-	(11,565,040)	-	(11,565,040)
기타포괄손익 소개	-	-	-	-	47,880,339,574	40,743,382,020	88,623,721,594	855,396,947	89,479,118,541
총포괄손익 합계	-	-	-	-	47,880,339,574	1,019,428,044,296	1,067,308,383,870	(4,644,563,229)	1,062,663,820,641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95,583,630,400)	(595,583,630,400)	-	(595,583,630,4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464,637,806,718	(464,637,806,718)	-	-	-
자기주식의 취득	-	-	(348,363,735,990)	-	-	-	(348,363,735,990)	-	(348,363,735,99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348,363,735,990)	-	464,637,806,718	(1,060,221,437,118)	(943,947,366,390)	-	(943,947,366,390)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954,959,485,000	4,497,785,722	(879,981,829,569)	528,894,053,906	6,490,161,242,572	2,061,681,420,740	9,160,212,158,371	50,075,952,125	9,210,288,110,496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5(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5(당) 기	제 34(전)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366,445,144,476	1,261,664,798,42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4	1,779,234,654,547	1,685,602,816,900
법인세의 납부		(412,789,510,071)	(423,938,018,473)
투자활동현금흐름		(780,380,930,363)	(85,834,706,383)

이자의 수취		11,048,692,697	19,926,974,548
배당금의 수취		28,902,614,644	26,140,194,806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22,157,602,604	562,840,3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157,635,467	346,404,223,599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21,261,394,235	33,667,340,960
장기예치금의 감소		460,542,059	30,190,725,542
유형자산의 처분		5,326,293,923	4,814,455,979
무형자산의 처분		152,168,000	2,639,090,910
투자부동산의 처분		440,084,055	4,407,486,21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663,396,465	144,712,189,2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15,894,849,350	3,134,000,000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처분		-	21,207,630,232
대여금의 회수		21,163,078,735	14,315,302,250
보증금의 회수		5,938,694,296	693,760,171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79,062,164	487,506,006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71,913,419,700)	(578,456,040,18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41,742,688,463)	(6,000,000,000)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80,708,000,459)	(14,422,747,7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증가		(3,499,960,186)	-
장기예치금의 증가		(247,623,644,989)	(223,125,104,602)
유형자산의 취득		(224,443,071,178)	(216,059,141,375)
무형자산의 취득		(43,671,230,422)	(35,743,635,276)
투자부동산의 취득		(109,650,106,837)	(86,158,241,566)
사용권자산의 취득		(180,751,941)	(522,118,555)
매각예정자산의 취득		-	(3,282,946,350)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취득		(62,764,091,620)	(101,500,000,000)
대여금의 증가		(27,337,319,371)	(35,189,427,682)
보증금의 증가		(492,753,891)	(956,483,452)
재무활동현금흐름		(912,610,052,141)	(808,888,421,592)
배당금의 지급	23	(595,583,630,400)	(556,951,661,200)
이자의 지급		(3,411,184,786)	(3,371,975,749)
리스부채의 상환		(23,278,731,696)	(21,186,506,323)
차입금의 상환		(109,050,576,815)	(165,109,414,746)
자기주식의 취득		(348,363,735,990)	(212,828,644,120)
유상증자		-	813,000
차입금의 증가		164,077,807,546	150,558,967,546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		3,0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26,545,838,028)	366,941,670,45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53,611,491,485	891,306,145,98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9,505,191,947	(4,636,324,95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46,570,845,404	1,253,611,491,485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21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지배기업은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지배기업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2년 12월 27일자로 지배기업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 증서(해외주식 예탁 증서 2주가 지배기업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11,677,543	8.51
중소기업은행	9,510,485	6.93
우리사주조합	3,860,635	2.81
자기주식	17,312,574	12.61
기타	94,931,260	69.14
합 계	137,292,497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주요영업활동	지분율(%) (*)	결산일	소재국가
------	-------	--------	---------------	-----	------

(주)케이티앤지	(주)한국인삼공사	홍삼 등의 제조·판매업	100.00	2021.12.31	국내
	영진약품(주)	의약품 제조·판매업	52.45	2021.12.31	국내
	태아산업(주)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100.00	2021.12.31	국내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담배 제조·판매업	99.99	2021.12.31	터키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잎담배 조달	99.99	2021.12.31	브라질
	KT&G Pars	담배 제조·판매업	99.99	2021.12.31	이란
	KT&G Rus L.L.C.	담배 제조·판매업	100.00	2021.12.31	러시아
	KT&G USA Corporation	담배 판매업	100.00	2021.12.31	미국
	(주)코스모코스	화장품 제조·판매업	98.56	2021.12.31	국내
	Renzoluc Pte., Ltd.	지주회사	100.00	2021.12.31	싱가포르
	PT KT&G Indonesia	담배 판매업	99.99	2021.12.31	인도네시아
	(주)상상스태이	호텔업	100.00	2021.12.31	국내
	KT&G Global Rus L.L.C.	담배 판매업	100.00	2021.12.31	러시아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부동산 개발·판매업	51.00	2021.12.31	국내
	KT&G Taiwan Corporation	담배 판매업	100.00	2021.12.31	대만
	마스틴제144호피에프브이(주)	부동산 개발·판매업	92.50	2021.12.31	국내
(주)한국인삼공사	(주)케이씨씨예본	한약재의 제조·판매업	100.00	2021.12.31	국내
	(주)케이씨씨라이프앤진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1.12.31	국내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홍삼 등의 제조·판매업	100.00	2021.12.31	중국
	정관장고빈유한공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1.12.31	대만
	Korean Red Ginseng Corp., Inc.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1.12.31	미국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1.12.31	중국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21.12.31	일본
(주)코스모코스	K&I HK Co., Ltd.	화장품 등 판매업	98.56	2021.12.31	홍콩
	K&I China Co., Ltd.	화장품 등 판매업	98.56	2021.12.31	중국
Renzoluc Pte., Ltd.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담배 제조·판매업	99.99	2021.12.31	인도네시아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PT Nusantara Indah Makmur	담배 판매업	99.99	2021.12.31	인도네시아

(*) 상기 지분율은 연결지분율입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각각 KT&G Taiwan Corporation의 주식 19,341,920주(8,081백만원), 마스틴제144호피에프브이(주)의 주식 7,400,000주(37,000백만원)를 출자설립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Renzoluc Pte., Ltd의 주식 6,978,948주(25,291백만원)를 지분매입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종속회사인 (주)코스모코스는 K&I HK Co., Ltd.의 주식 250,000주(287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전기 중 종속기업인 (주)상상스태이의 주식 4,000,000주(20,000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한국인삼공사	2,307,528	191,567	1,292,829	88,832	102,447
영진약품(주)	194,088	89,203	196,067	(11,582)	(9,546)
태아산업(주)	56,471	6,289	25,236	978	977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27,209	53,939	16,045	(23,400)	(9,045)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1,988	184	173	66	94
KT&G Pars	6	57,442	-	(1,546)	(2,750)
KT&G Rus L.L.C.	132,554	53,307	47,233	2,791	8,777
KT&G USA Corporation	52,020	75,555	259,083	(51,402)	(50,804)
(주)코스모코스	47,035	32,285	72,106	517	1,037
Renzoluc Pte., Ltd.	135,221	34,142	-	(788)	6,170
PT KT&G Indonesia	63,352	94,661	164,364	2,784	1,149
(주)상상스테인	45,379	40,560	8,946	(7,275)	(7,221)
KT&G Global Rus L.L.C.	64,941	57,857	31,625	7,371	7,489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138,327	90,495	120,988	44,536	44,536
KT&G Taiwan Corporation	7,988	439	-	(705)	(532)
마스틴제144호피에프브이(주)	87,849	48,052	58	(203)	(203)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227,384	64,680	85,778	8,120	19,307
PT Nusantara Indah Makmur	81	-	-	1	6
(주)케이씨에본	51,561	3,070	15,487	1,767	1,784
(주)케이씨라이프엔진	30,544	5,729	36,416	1,683	1,726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55,853	861	17,309	871	6,518
정관장고빈유한공사	29,224	23,971	38,676	1,312	1,749
Korean Red Ginseng Corp., Inc.	23,929	11,392	35,332	1,604	2,839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47,981	35,428	74,930	357	1,636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9,627	7,037	11,203	560	506
K&I HK Co., Ltd.	96	-	-	14	5
K&I China Co., Ltd.	428	4,716	2,101	(126)	(563)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한국인삼공사	2,204,243	190,729	1,333,565	109,387	115,152
영진약품(주)	188,101	73,669	208,464	(133)	(1,319)
태아산업(주)	55,521	6,316	21,758	338	294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32,944	50,628	18,456	(8,288)	(3,825)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1,872	162	279	40	(592)
KT&G Pars	135	54,820	-	(36,872)	2,559
KT&G Rus L.L.C.	105,969	35,500	46,538	3,551	(15,481)
KT&G USA Corporation	141,829	114,560	246,306	5,274	3,425
(주)코스모코스	43,601	29,888	65,543	(602)	(199)
Renzoluc Pte., Ltd.	126,532	31,623	-	(1,372)	(8,392)
PT KT&G Indonesia	75,923	108,382	107,834	(31,036)	(28,924)
(주)상상스тей	56,171	44,131	6,906	(9,154)	(9,055)
KT&G Global Rus L.L.C.	36,739	37,144	30,690	7,727	8,903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69,579	66,283	-	(2,491)	(2,491)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196,605	53,208	87,290	9,520	(1,455)
PT Nusantara Indah Makmur	75	-	-	-	(6)
(주)케이지씨예본	49,690	2,983	13,960	1,227	1,161
(주)케이지씨라이프엔진	29,904	6,815	44,997	2,269	2,445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49,102	627	12,316	(923)	(541)
정관장고빈유한공사	23,376	19,872	33,248	821	806
Korean Red Ginseng Corp., Inc.	18,306	8,608	28,801	1,740	1,100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39,581	28,665	60,779	82	159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9,102	7,018	11,214	786	733
K&I HK Co., Ltd.	9	205	-	(102)	(89)
K&I China Co., Ltd.	496	4,221	1,173	(1,351)	(1,338)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 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을 조기도입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에 대해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소급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없었으며 비교 표시된 전기재무제표도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 할인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41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 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 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조정합니다.

③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토지	비한정
건물	10~60년
건축물	4~40년
기계장치	2~20년
차량운반구	3~10년
공구와기구	4~5년
비품	2~10년
기타유형자산	1~5년 또는 비한정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개발중인무형자산 및 일부 기타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1~14년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개발중인무형자산)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주로 연결회사가 현재 진행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발원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2) 금융자산 (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채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채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3)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채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 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 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9)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 (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차입금 및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3)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로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거나, 금융리스로 분류한 후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25)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결회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제외하고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19년 중 종속기업 KT&G Pars의 청산 진행을 의결함에 따라 청산을 가정한 연결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7)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8)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1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검사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연결회사의 영업권(전기: 16,355백만원)은 모두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고하는 담배소비세인상, 그로 인하여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 내수시장 경쟁구조 등으로 미래현금흐름 추정 및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 수행 시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였고, 회수가능액의 추정에는 해당 산업의 미래 추세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외부의 역사적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주석 24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4 참조).

(3) COVID-19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별도대차대조표(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5(당)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4(전)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5(당)기	제 34(전)기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 32, 33	590,603,139,764	1,076,113,853,748
기타금융자산	5, 32, 33, 34	332,200,000,000	330,596,92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 32, 33	965,384,441,544	914,423,857,13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 31, 32	788,803,379,227	1,049,822,176,064
파생상품자산	32, 34	580,339,743	12,710,170,259
재고자산	8, 34	924,901,908,672	993,341,734,193
환불자산등	20	1,549,159,785	3,543,976
미수담배소비세등		307,592,828,809	237,745,495,978
선금금		71,669,672,717	73,936,767,009

선급비용		10,813,947,699	17,536,265,109
매각예정자산	15, 31	14,900,507,758	2,000,000,000
유동자산 합계		4,008,999,325,718	4,708,230,783,467
비유동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	5, 32, 34	8,707,220,000	8,540,300,000
장기에치금	32, 34	1,250,467,510,043	909,793,848,086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 32	298,480,561,239	248,604,519,22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 31, 32	127,671,062,526	121,173,935,8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9, 32	203,172,444,191	214,394,237,25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0, 31	237,986,101,620	133,885,010,000
종속기업투자	11, 31	1,201,395,995,281	1,154,257,150,910
유형자산	12, 31	1,128,957,038,458	1,139,629,710,585
무형자산	13, 31	97,363,311,045	66,322,853,919
투자부동산	14, 34	1,128,470,409,577	1,101,189,083,097
사용권자산	16, 31	22,643,611,457	29,047,382,278
장기선급비용		6,962,631,226	8,594,020,771
이연법인세자산	29	49,238,252,507	35,880,808,023
순확정급여자산	19	11,135,956,233	-
비유동자산 합계		5,772,652,105,403	5,171,312,859,967
자 산 총 계		9,781,651,431,121	9,879,543,643,434
부채 및 자본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7, 32, 34,35	588,570,275	816,523,01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 31, 32	776,356,232,986	811,176,851,324
유동성리스부채	31, 32, 35	7,343,536,299	8,618,991,597
파생상품부채	32, 34	907,708,348	57,106,354
선수금	31	13,104,141,586	96,211,657,084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20, 34	9,903,555,310	15,303,322,149
당기법인세부채	29	209,347,761,616	211,379,530,801
미지급담배소비세등		696,436,408,096	574,390,725,117
유동부채 합계		1,713,987,914,516	1,717,954,707,436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 31, 32	45,879,579,619	41,530,363,086
장기리스부채	31, 32, 35	14,876,074,384	20,277,850,236
장기선수금		4,148,654,673	6,625,435,705
순확정급여부채	19	-	38,161,141,512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20, 34	1,218,175,670	1,051,955,528
비유동부채 합계		66,122,484,346	107,646,746,067
부 채 총 계		1,780,110,398,862	1,825,601,453,503
자본			

자본금	21	954,959,485,000	954,959,485,000
기타자본잉여금	21	3,582,160,908	3,582,160,908
자기주식	22	(879,981,829,569)	(531,618,093,579)
자기주식처분이익	22	528,894,053,906	528,894,053,906
적립금	23	6,515,544,653,691	6,037,903,146,578
이익잉여금	24	878,542,508,323	1,060,221,437,118
자 본 총 계		8,001,541,032,259	8,053,942,189,93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781,651,431,121	9,879,543,643,434

②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5(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5(당)기	제 34(전)기
매출	4, 25, 31	3,490,455,807,608	3,435,384,229,940
제조당배		2,752,009,088,503	2,690,675,650,043
부동산		647,203,267,762	654,578,109,827
수출임담배등		91,243,451,343	90,130,470,070
매출원가	26, 31	(1,590,203,573,600)	(1,409,121,175,446)
제조당배		(1,190,314,946,021)	(1,038,116,213,288)
부동산		(327,741,741,075)	(309,775,154,881)
수출임담배등		(72,146,886,504)	(61,229,807,277)
매출총이익		1,900,252,234,008	2,026,263,054,494
판매비와관리비	26, 31	(816,828,245,814)	(689,245,124,865)
영업이익		1,083,423,988,194	1,337,017,929,629
기타수익	27, 31	168,213,113,517	276,377,431,262
기타비용	27, 31	(104,940,242,792)	(255,736,374,780)
금융수익	28, 31, 32	71,322,275,280	116,809,867,215
금융원가	28, 31, 32	(15,217,240,423)	(8,990,540,12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2,801,893,776	1,465,478,313,201
법인세비용	29	(348,431,761,674)	(390,168,825,307)
당기순이익		854,370,132,102	1,075,309,487,894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37,176,076,616	(31,670,645,054)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	25,015,632,253	(15,088,050,7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9, 32	12,160,444,363	(16,582,594,278)
당기총포괄이익		891,546,208,718	1,043,638,842,840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0	6,905	8,553

③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35(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익	적립금	이익잉여금	총자본
2020년 01월 01일(전기초)	954,959,485,000	3,582,160,908	(318,789,449,459)	528,894,053,906	5,723,185,728,271	888,251,673,785	7,780,083,652,41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075,309,487,894	1,075,309,487,894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5,088,050,776)	(15,088,050,7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6,582,594,278)	-	(16,582,594,278)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16,582,594,278)	(15,088,050,776)	(31,670,645,054)
총포괄손익	-	-	-	-	(16,582,594,278)	1,060,221,437,118	1,043,638,842,840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56,951,661,200)	(556,951,661,2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331,300,012,585	(331,300,012,585)	-
자기주식의 취득	-	-	(212,828,644,120)	-	-	-	(212,828,644,12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212,828,644,120)	-	331,300,012,585	(888,251,673,785)	(769,780,305,320)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954,959,485,000	3,582,160,908	(531,618,093,579)	528,894,053,906	6,037,903,146,578	1,060,221,437,118	8,053,942,189,931
2021년 01월 01일(당기초)	954,959,485,000	3,582,160,908	(531,618,093,579)	528,894,053,906	6,037,903,146,578	1,060,221,437,118	8,053,942,189,93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854,370,132,102	854,370,132,102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5,015,632,253	25,015,632,2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2,160,444,363	-	12,160,444,3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 체	-	-	-	-	843,256,032	(843,256,032)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13,003,700,395	24,172,376,221	37,176,076,616
총포괄이익	-	-	-	-	13,003,700,395	878,542,508,323	891,546,208,718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95,583,630,400)	(595,583,630,400)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464,637,806,718	(464,637,806,718)	-
자기주식의 취득	-	-	(348,363,735,990)	-	-	-	(348,363,735,990)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348,363,735,990)	-	464,637,806,718	(1,060,221,437,118)	(943,947,366,390)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954,959,485,000	3,582,160,908	(879,981,829,569)	528,894,053,906	6,515,544,653,691	878,542,508,323	8,001,541,032,259

④ 별도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5(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5(당)기	제 34(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103,678,444,553	1,186,128,383,369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5	1,481,600,690,337	1,539,693,505,685
법인세의 납부		(377,922,245,784)	(353,565,122,316)
투자활동현금흐름		(635,132,982,127)	13,287,903,556
이자의 수취		6,123,211,563	16,179,752,431
배당금의 수취		28,651,214,644	26,056,275,636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00,596,920,000	477,340,3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157,635,467	340,375,065,790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20,602,082,570	33,667,340,9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15,894,789,350	3,134,000,000
장기예치금의 감소		460,542,059	30,190,725,542
유형자산의 처분		8,063,743,585	4,114,858,147
무형자산의 처분		-	1,000,000,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440,084,055	4,407,486,21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551,597,722	145,158,205,702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21,207,630,232
대여금의 회수		17,885,199,414	12,272,638,534
보증금의 회수		2,373,668,634	1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02,366,920,000)	(436,340,3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41,742,688,463)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79,232,000,459)	(12,242,747,7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2,999,969,580)	-
장기예치금의 증가		(249,059,995,339)	(223,125,104,602)
유형자산의 취득		(136,134,424,211)	(162,635,660,044)
무형자산의 취득		(38,273,672,075)	(28,696,399,787)
투자부동산의 취득		(24,240,664,066)	(86,158,241,566)
매각예정자산의 취득		-	(3,282,946,350)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79,786,091,620)	(101,50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70,371,877,500)	(20,000,000,000)
대여금의 증가		(12,604,396,405)	(27,534,858,854)
보증금의 증가		(120,971,472)	(400,116,655)
재무활동현금흐름		(954,153,562,201)	(778,477,470,287)
배당금의 지급		(595,583,630,400)	(556,951,661,200)
이자의 지급		(690,937,774)	(666,443,506)
리스부채의 상환		(9,515,258,037)	(8,030,721,461)

자기주식의 취득		(348,363,735,990)	(212,828,644,12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485,608,099,775)	420,938,816,638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076,113,853,748	656,775,412,33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97,385,791	(1,600,375,22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90,603,139,764	1,076,113,853,748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5(당) 기		제 34(전) 기	
	처분예정일: 2022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1년 3월 19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878,543		1,060,22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854,370		1,075,3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843)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25,016		(15,088)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878,543)		(1,060,221)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4,800원(96%) 전기 4,800원(96%)	(575,904)		(595,584)	
별도적립금의 전입	(302,639)		(464,637)	
III.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당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21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당사는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당사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2년 12월 27일자로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회사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11,677,543	8.51
중소기업은행	9,510,485	6.93
우리사주조합	3,860,635	2.81
자기주식	17,312,574	12.61
기타	94,931,260	69.14
합 계	137,292,497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의 개정을 조기도입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에 대해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소급 적용에 따른 누적 효과는 없었으며 비교 표시된 전기재무제표도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 할인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

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
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
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
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
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
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
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토지	비한정
건물	10~60년
건축물	10~40년
기계장치	10~12년
차량운반구	4년
공구와기구	4년
비품	4년
기타유형자산	1~5년 또는 비한정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 ~ 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4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개발중인무형자산)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주로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원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

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1)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2)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8) 수익인식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 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 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인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금액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6)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1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투자 손상검사

종속기업투자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검사 수행 시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였고, 회수가능액의 추정에는 해당 산업의 미래 추세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외부의 역사적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 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향후 5개년치를 추정하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1%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관련 산업보고서의 예상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이며, 당기와 전기 중 사용가치 측정 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 분	제 35(당) 기	제 34(전) 기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	14.80	12.90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은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로서,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민감도 분석의 결과 손상차손이 인식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1% 증가시	1% 감소시
할인율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14,286)	16,923
손상차손 인식액	(14,286)	11,099
영구성장률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6,601	(5,709)
손상차손 인식액	6,601	(5,709)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고하는 담배소비세인상, 그로 인하여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 내수시장 경쟁구조 등으로 미래현금흐름 추정 및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주석 25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5 참조).

(3) COVID-19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명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T&G Corporation 이라고 한다.	제1조(명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T&G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자구 수정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8. (생략) 49. 위 각호와 관련한 연구사업 ② 위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 출연, 용자, 지원 등 부대사업일체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8. (현행과 같음) 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② 회사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 출연, 용자, 지원 등 관련한 부대사업을 한다.	자구 수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3조(본정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자구 수정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t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t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전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본점 소재지 지역신문 추가 및 자구 수정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억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억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의미 명확화
제6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74,566,387주로 한다.	제6조(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74,566,387주로 한다.	자구 수정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또는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신설)	제7조(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또는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전자증권법 시행 사항 반영

<p>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p> <p>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제2항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이상으로 하여 발행할 때에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p> <p>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제2항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을 준용한다.</p>	<p>자구 수정</p>
<p>제7조의3(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회사가 발행할 전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p> <p>②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우선주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전환우선주식 1주는 그 주주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며,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기간은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발행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 기간내에서 전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전환우선주주의 지분율(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비례지분율)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환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④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p> <p>⑥ 전환우선주식은 발행전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p> <p>⑦ 제7조의2제4항은 전환우선주식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7조의3(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p> <p>②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이상으로 하여 발행할 때에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우선주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을 준용한다.</p> <p>③ 전환우선주식 1주는 그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된다.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기간은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하되, 발행 전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환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을 준용한다.</p> <p>⑤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전환우선주주의 지분율(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비례지분율)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환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때에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p> <p>⑦ 전환우선주식은 발행 전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p> <p>⑧ 제7조의2 제4항은 전환우선주식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의미 명확화(③항 일부 내용 분리하여 ⑤항 별도신설) 및 자구 수정</p>

<p>제8조(신주의 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p> <p>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의 발행에 있어서 그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소유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한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기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p> <p>③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동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한 이사주조합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p> <p>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8조(신주의 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p> <p>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의 발행에 있어서 그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p> <p>④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이사주조합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p> <p>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의미 명확화(①항 일부 내용 분리하여 ②항 별도신설) 및 자구 수정</p>
------------------------------------------------------------------------------------------------------------------------------------------------------------------------------------------------------------------------------------------------------------------------------------------------------------------------------------------------------------------------------------------------------------------------------------------------------------------------------------------------------------------------------------------------------------------------------------------------------------------------------------------------------------------------------------------------------	-------------------------------------------------------------------------------------------------------------------------------------------------------------------------------------------------------------------------------------------------------------------------------------------------------------------------------------------------------------------------------------------------------------------------------------------------------------------------------------------------------------------------------------------------------------------------------------------------------------------------------------------------------------------------------------------------------------------------------	----------------------------------------------

<p>제9조(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p> <p>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p> <p>3. (생략)</p> <p>② (생략)</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상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범위내에서 별도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p> <p>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퇴직한 경우</p> <p>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임·해직된 경우</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제9조(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서 경영성과 향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p> <p>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p> <p>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의 범위에서 별도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p> <p>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p>1.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후 임의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p> <p>2. 해당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 또는 해직된 경우</p> <p>3.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준용 법조문 조항 변경 반영 등 의미 명확화 및 지구 수정</p>
-------------------------------------------------------------------------------------------------------------------------------------------------------------------------------------------------------------------------------------------------------------------------------------------------------------------------------------------------------------------------------------------------------------------------------------------------------------------------------------------------------------------------------------------------------------------------------------------------------------------------------------------------------------------------------------------------------------------------------------------------------------------------------------------------------------------------------------------------------------------------------------------------------------------------------------------------------------------------------------------------------------------------------------------------------------------------------------------------------------------------------------------------------------------------------------------------------------------------------------------------------------------------------------	------------------------------------------------------------------------------------------------------------------------------------------------------------------------------------------------------------------------------------------------------------------------------------------------------------------------------------------------------------------------------------------------------------------------------------------------------------------------------------------------------------------------------------------------------------------------------------------------------------------------------------------------------------------------------------------------------------------------------------------------------------------------------------------------------------------------------------------------------------------------------------------------------------------------------------------------------------------------------------------------------------------------------------------------------------------------------------------------------------------------------------------------------------------------------------------------------------------------------------------------------------------------------------------	-------------------------------------------------

<p>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p> <p>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증권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p> <p>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그 밖에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계 업무규정에 따른다.</p>	<p>전자증권법 시행 사항 반영</p>
<p>제12조(주주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p> <p>① 주주와 질권등록자는 그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질권등록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삭제)</p>	<p>전자증권법 시행 사항 반영</p>
<p>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회사는 매결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기준일)</p> <p>①(삭제)</p> <p>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 사항 반영 및 의미 명확화</p>

<p>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기타의 필요에 따라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4. (생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으로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며,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전환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이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으로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하며,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이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자구 수정</p>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으로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이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으로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이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자구 수정</p>

<p>(신설)</p>	<p>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p>전자증권법 시행 사항 반영</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p>	<p>준용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p>
<p>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및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사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단,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에게 미리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의미 명확화 및 자구 수정</p>
<p>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전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대전일보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전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대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자구 수정</p>
<p>제19조(주주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된다.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주주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사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자구 수정</p>
<p>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38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4항에 의한 해임의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가 정한 의결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 본문을 변경할 시에는 상법 제434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p>	<p>제20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38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 및 제32조의2 제4항에 따른 해임의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 본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p>	<p>자구 수정</p>

<p>제21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1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자구 수정</p>
<p>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자구 수정</p>
<p>제23조(의사록의 작성)</p> <p>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보존한다.</p>	<p>제23조(의사록의 작성)</p> <p>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자구 수정</p>
<p>제24조(주주협의회)</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이내의 주주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되, 기관투자가는 5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2인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이후의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 현재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상위 14인이내</p> <p>2.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1인</p> <p>③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담배사업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주주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 주주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p> <p>2. 이사회가 주주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p> <p>3. 회사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주주협의회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의무</p> <p>⑤ 사장은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을 후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에 주주협의회를 소집한다.</p> <p>⑥ 주주협의회 의장은 주주협의회 구성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p> <p>⑦ 제4항 제2호와 관련하여 주주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 1인은 보유주식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p> <p>⑧ 회사는 주주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중 이사회에서 주주협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주협의회에 보고한다.</p>	<p>(삭제)</p>	<p>사문화된 공기업 관련 조항 삭제</p>
<p>제25조(이사의 수)</p> <p>회사는 대표이사인 사장 1인과 9인이내의 이사를 둔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4인이내로 하되, 총 이사의 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p>	<p>제25조(이사의 인원수)</p> <p>회사는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사내 이사의 인원은 4인 이내로 하되, 총 이사 인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p>	<p>의미 명확화(이사로 통일) 및 자구 수정</p>

<p>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p> <p>① 사장은 제32조에 의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사내이사는 사장이 추천한 자중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장은 사내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직무를 1년 이상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때</p> <p>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적이 극히 불량한 때</p> <p>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가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사내이사후보를 추천한다. 이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장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행한 사내이사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p> <p>④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그 선임 및 해임시에는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사외이사는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모색한 후보자 및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협의회가 제안한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p> <p>① 사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사내이사는 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장은 사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p> <p>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가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사내이사후보를 추천한다. 이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장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행한 사내이사후보 추천은 무효로 한다.</p> <p>④ 제34조의3에 따른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 및 해임을 할 때에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사외이사는 제34조의5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의미 명확화 및 자구 수정</p>
<p>제27조(이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사외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를 마치고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p>	<p>제27조(이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사외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자구 수정</p>
<p>제28조(사장과 사내이사의 직무)</p> <p>②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8조(사장과 사내이사의 직무)</p> <p>②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으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자구 수정</p>
<p>제30조(이사의 보수)</p> <p>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다.</p>	<p>제30조(이사의 보수)</p> <p>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다.</p>	<p>자구 수정</p>

<p>제31조(이사의 퇴직금) 사장과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사내이사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p>	<p>제31조(이사의 퇴직금) 사장과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사내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p>	<p>자구 수정</p>
<p>제3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순으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사회내 임시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에는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다. 1. 사외이사중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6인이내 2. 현직 사장 1인. 다만, 현직사장이 사장후보로 추천되기를 원하거나 유고시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중 1인을 선임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당해 사장후보가 될 수 없다. ② (생략)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전 60일내에 이사회회의 결의로 구성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됨과 동시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장의 임기도중 해임 또는 유고로 재선임 할 경우에는 재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구성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를 물색한 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사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추천하기 전에 이사회에 사장 후보자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임시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에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다. 1.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6인 이내의 사외이사 2. 현직 사장 1인. 다만, 현직 사장이 사장후보로 추천되기를 원하거나 유고한 때에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중 1인을 선임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후보가 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전 60일내에 이사회회의 결의로 구성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경영계약을 체결한 때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장이 임기 도중 해임되거나 유고로 사장을 다시 선임 할 경우에는 선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물색하고 추천한 사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추천하기 전에 이사회에 사장후보자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자구 수정 및 사장후보추천 프로세스 체계화 및 선진화</p>
<p>제32조의2(사장과 의 계약)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사장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32조의2(사장과 의 경영계약 등)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③ 사장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자구 수정</p>
<p>제33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제, 경영, 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독립성을 갖춘 자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p>	<p>제33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제, 경영,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독립성을 갖춘 자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p>	<p>자구 수정</p>

<p>제34조(이사회 구성과 운영)</p> <p>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에서 의하여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배제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p>	<p>제34조(이사회 구성과 운영)</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배제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p>	<p>의미 명확화 및 자구 수정</p>
<p>제34조의2(이사회내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p>	<p>제34조의2(이사회내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p>	<p>자구 수정</p>
<p>제34조의4(감사위원회의 직무)</p> <p>②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이사회 소집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p>	<p>제34조의4(감사위원회의 직무)</p> <p>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이사회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p>	<p>자구 수정</p>
<p>제34조의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p> <p>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p> <p>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p>	<p>제34조의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p> <p>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p> <p>2.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p>	<p>자구 수정</p>

<p>제35조(이사회 의의)</p> <p>① 이사회 의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p>	<p>제35조(이사회 의의)</p> <p>① 이사회 의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p>	<p>자구 수정</p>
<p>제36조(이사회 의결)</p> <p>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건의시에는 사외이사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 또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시에는 이사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p>	<p>제36조(이사회 의결)</p> <p>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건의할 때에는 사외이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 또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승인할 때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p>	<p>자구 수정</p>
<p>제37조(이사회 의사록)</p> <p>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그 안건, 경과요령과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p>	<p>제37조(이사회 의사록)</p> <p>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자구 수정</p>
<p>제38조(경영임원)</p> <p>② 제1항에 의한 경영임원은 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p> <p>③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경영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p>	<p>제38조(경영임원)</p> <p>② 제1항의 경영임원은 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p> <p>③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영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p>	<p>자구 수정</p>
<p>제38조의2(고문)</p> <p>사장은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했던 사장과 사내이사, 경영임원 중 경영의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회사의 경영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38조의2(고문)</p> <p>사장은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했던 사장과 사내이사, 경영임원 중 경영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회사의 경영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자구 수정</p>
<p>제41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p> <p>① 회사의 사장은 매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4. 연결재무제표</p> <p>②,③ (생략)</p> <p>④ 사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제41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p> <p>① 회사의 사장은 매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연결재무제표</p> <p>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사장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자구 수정</p>

제42조(잉여금의 처분)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4. (생략)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생략)	제42조(잉여금의 처분)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2. 법정적립금 3.~4. (현행과 같음) 5. 이익잉여금처분액 6.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43조(이익배당) ⑤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제3항의 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각각 지급하며, 이익배당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이익배당) ⑤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제3항의 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각각 지급하며, 이익배당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구 수정
제43조의2(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43조의2(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상법 내용 반영
(신규 추가)	부칙(2022.3.29)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명기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명)

-제3-1호 : 사외이사 손관수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 이지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손관수	1960.10.1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지희	1961.6.30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손관수	대한자동차 경주협회장 (KARA)	2019.02~2021.12 2014.12~2019.01 2013.10~2014.11 2012.01~2013.10 2010.01~2012.01 2006.04~2010.01	前) CJ대한통운 상근 고문 前) CJ대한통운 공동 대표이사 前) CJ 인재원장 前) CJ GLS 대표이사 前) CJ GLS 부사장 前) CJ GLS 본부장	없음

		2004.04~2006.04 2001.07~2004.03 1998.01~2001.07	前) 오렌지디스플레이 부사장 前) IDS 부사장 前) 삼성자동차 인사팀장	
이지희	더블유캠프 대표이사	2018.02~2022.02 2016.02~2017.08 2011~2015 2010.03~2016.01 2005~2015 2000.09 2000.05 1999.01~2010.01 1984.04~1998.12	前) 더블유웍스 대표이사 前) 중앙대학교 광고학과 겸임교수 前) 부산국제광고제 심사위원 前) 포스트비주얼 공동대표 前) 대한민국 방송광고대상 심사위원 前) 아시아태평양광고제 심사위원 前) 클리오 국제광고제 심사위원 前) 웰콤 ECD 부사장 前) 오리콤 카피라이터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p><손관수>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다양한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지원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p> <p>또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직무수행을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고, 회사의 조력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p> <p>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p> <p><이지희>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의 부사장 및 디지털 광고회사의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전통적인 광고채널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광고와 관련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p> <p>또한, 이해관계자의 균형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p>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p><손관수> 손관수 후보자는 CJ그룹 물류계열사의 글로벌 성장을 이끈 물류 전문가로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탁월한 경영 성과를 만들어낸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p> <p>손관수 후보자는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주도하는 등 풍부한 기업경영 경험 및 탁월한 위기극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항만물류협회장('16.2월~19.2월) 재임시절 항만하</p>

역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업무 수행에 특정한 이해 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후보자의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경험은 회사의 신사업 추진 등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지희>

이지희 후보자는 38여년간 광고업계에서 활약한 광고 전문가로서, 다수의 국제광고제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권위있는 국제광고제에서 수상하여 세계적으로 한국 광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소비재 상품의 제품 개발부터 Naming, Design, Branding, Communication까지 총괄 디렉터로 활약하여,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후보자는 소비재 산업 및 광고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참고자료

당사는 금번 제3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 증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사의 역량 등 정보를 담은 이사회 역량 지표(Board Skills Matrix)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KT&G 이사회역량지표(BSM)

경험 및 전문성	백중수	김명실	고요성	임민규	순관수(신임)	이지희(신임)	백복인(CEO)	공경현(사내)
Leadership (8/8)	●	●	●	●	●	●	●	●
- CEO Experience (4/8)	●	●	●	●	●	●	●	●
- CFO Experience (3/8)	●	●	●	●	●	●	●	●
Business Operations (6/8)	●	●	●	●	●	●	●	●
Manufacturing (3/8)	●	●	●	●	●	●	●	●
Supply Chain (1/8)	●	●	●	●	●	●	●	●
Finance/Accounting (2/8)	●	●	●	●	●	●	●	●
Risk Management (8/8)	●	●	●	●	●	●	●	●
Global Business (5/8)	●	●	●	●	●	●	●	●
ESG Strategy (4/8)	●	●	●	●	●	●	●	●
M&A (3/8)	●	●	●	●	●	●	●	●
Marketing/PR/Consumer (3/8)	●	●	●	●	●	●	●	●
Legal/Regulatory (1/8)	●	●	●	●	●	●	●	●
신임년도 (평균 2.1년)	2018	2020	2020	2021	2022	2022	2015	2021
독립성 (75%)	●	●	●	●	●	●	●	●
소속 위원회	자배, 감사	평가, 감사	평가, 감사	자배, 평가	미정	미정	경영	자배, 경영
나이 (평균 60.4세)	63	67	50	68	63	62	58	52
성별 (여성비율 12.5%)	남	남	남	남	남	여	남	남

 Leadership	글로벌 대기업의 전략 방향, 인적 자원 관리, 위험 관리, 성장 동력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Business Operations	기업 운영 경험	
 Manufacturing	인프라 구축, 생산 Data 확보·분석, 원가관리를 통한 생산 효율 향상과 제조 혁신 등 제조 고도화 경험 및 이해도	
 Supply Chain	기업의 생산·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 최적화 경험 및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관점에 대한 이해도	
 Finance/Accounting	기업의 재무/회계 보고 프로세스, 자본 할당 등에 관한 전문성	
 Risk Management	경영·법률·회계 관련 전사적 리스크 사전진단 및 관리 프로세스 운영 경험 및 이해도	
 Global Business	다양한 국가의 경제, 문화 및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시장에 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을 주도한 경험	
 ESG Strategy	환경경영·사회책임경영·지배구조 관련 경험 및 전문성	
 M&A	기업 인수·합병에 결정을 평가하고, 기업의 전략과 문화에 대한 목표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통합을 통해 성장을 이끈 경험	
 Marketing/PR/Consumer	시장점유율 상승, 브랜드 인지도 확대, 기업 이미지 관리 등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Legal/Regulatory	산업 관련 법/규제에 대한 전문성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22년 3월 10일

후보자 : 손관수 (서명) 날인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22년 3월 10일

후보자 : 이지희 (서명  날인)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손관수)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손관수	1960.10.1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손관수	대한자동차 경주협회장 (KARA)	2019.02~2021.12 2014.12~2019.01 2013.10~2014.11 2012.01~2013.10 2010.01~2012.01 2006.04~2010.01 2004.04~2006.04 2001.07~2004.03 1998.01~2001.07	前) CJ대한통운 상근 고문 前) CJ대한통운 공동 대표이사 前) CJ 인재원장 前) CJ GLS 대표이사 前) CJ GLS 부사장 前) CJ GLS 본부장 前) 오렌지디스플레이 부사장 前) IDS 부사장 前) 삼성자동차 인사팀장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손관수 후보자는 CJ그룹 물류계열사의 글로벌 성장을 이끈 물류 전문가로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탁월한 경영 성과를 만들어낸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관수 후보자는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주도하는 등 풍부한 기업경영 경험 및 탁월한 위기극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향만물류협회장('16.2월~19.2월) 재임시절 향만하역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업무 수행에 특정한 이해 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후보자의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및 경험은 독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감사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20130028 10.112.0.47 2022-03-09 14:22:17

확 인 서

20130028 10.112.0.47 2022-03-09 14:22:17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130028 10.112.0.47 2022-03-09 14:22:17

10.112.0.47 2022-03-09 14:22: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10.112.0.47 2022-03-09 14:22:17

2022년 3월 10일

20130028 10.112.0.47 2022-03-09 14:22:17

후보자 : 손관두 (서명  날인)

10.112.0.47 2022-03-09 14:22:17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제 36기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6)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제35기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6)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385백만원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각 연도말 재직중인 이사수 기준임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이사에
 에게 지급한 총 금액으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받은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퇴임 사내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 미포함